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신림공영차고지(저류조 포함)조성공사[장기1차]]

□ 점검일시 : 2020.10.13 (화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정진혁

○ 가설통로 안전(토목부)

- 해당 개소에 작업자가 투입될 경우 안전하게 비탈면을 상승/하강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고, 출입 시 추락위험이 있는 개소는 작업이 없을 경우 출입을 통제하여 관리 요망

- 흙막이가시설 배면은 배수시설 확인, 계측 등 점검 및 유지관리 통로로 활용되므로 통행에 방해되는 호스, 잉여 자재는 제거 요망

- 덤프 동선이 일반 차량주차장을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일반 차량과 보행자의 교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운전원 교육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),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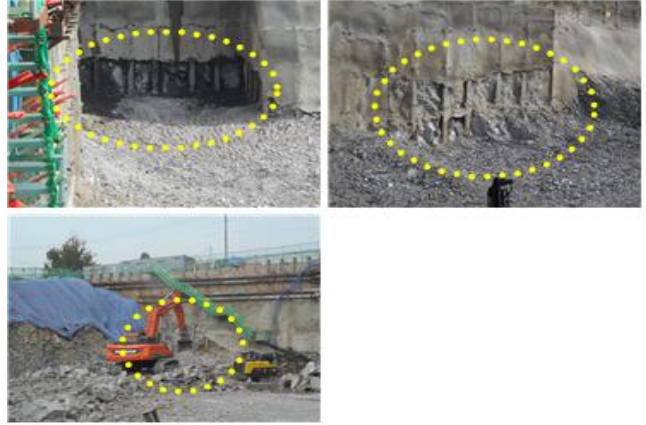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토목부)

- 굴착면이 연암이상으로 토류판 대신 와이어메쉬+숏크리트 마감인 경우 노출암반의 풍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흙막이가시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숏크리트 타설 요망

- 흙막이가시설 배면에 거치한 컨테이너 박스는 구조계산서 상 허용하중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하중을 초과하거나 허용하중이 계산되지 않은 경우 안정성 검토 요망

- 자립식옹벽 배면부에 토류판이 매설되어 있어 추후 토류판 부식으로 인한 되메우기와의 간격 발생, 콘크리트 단면 축소 등의 영향이 없는지 확인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토목부)

- 흙막이가시설 배면에 설치한 계측기의 보호시설은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크기 및 위치 조정 요망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



○ 사면 안전(토목부)

- 가설도로 굴착 비탈면은 부지정지가 완료된 후 암반풍화를 억제하고 사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보양 요망
- 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40조(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)



○ 기타 안전관리(토목부)

- 현장 내 비상상황 및 야간동선 확보를 위한 비상조명 추가 설치 요망

